

3. 주출입구 접근로



- ① 턱 낮추기
- ② 접근로의 기울기
- ③ 접근로의 손잡이와 유효폭
- ④ 경사로의 손잡이
- ⑤ 경사로의 형태 및 유효폭
- ⑥ 교차부분과 접속부분
- ⑦ 추락방지턱

■ 설치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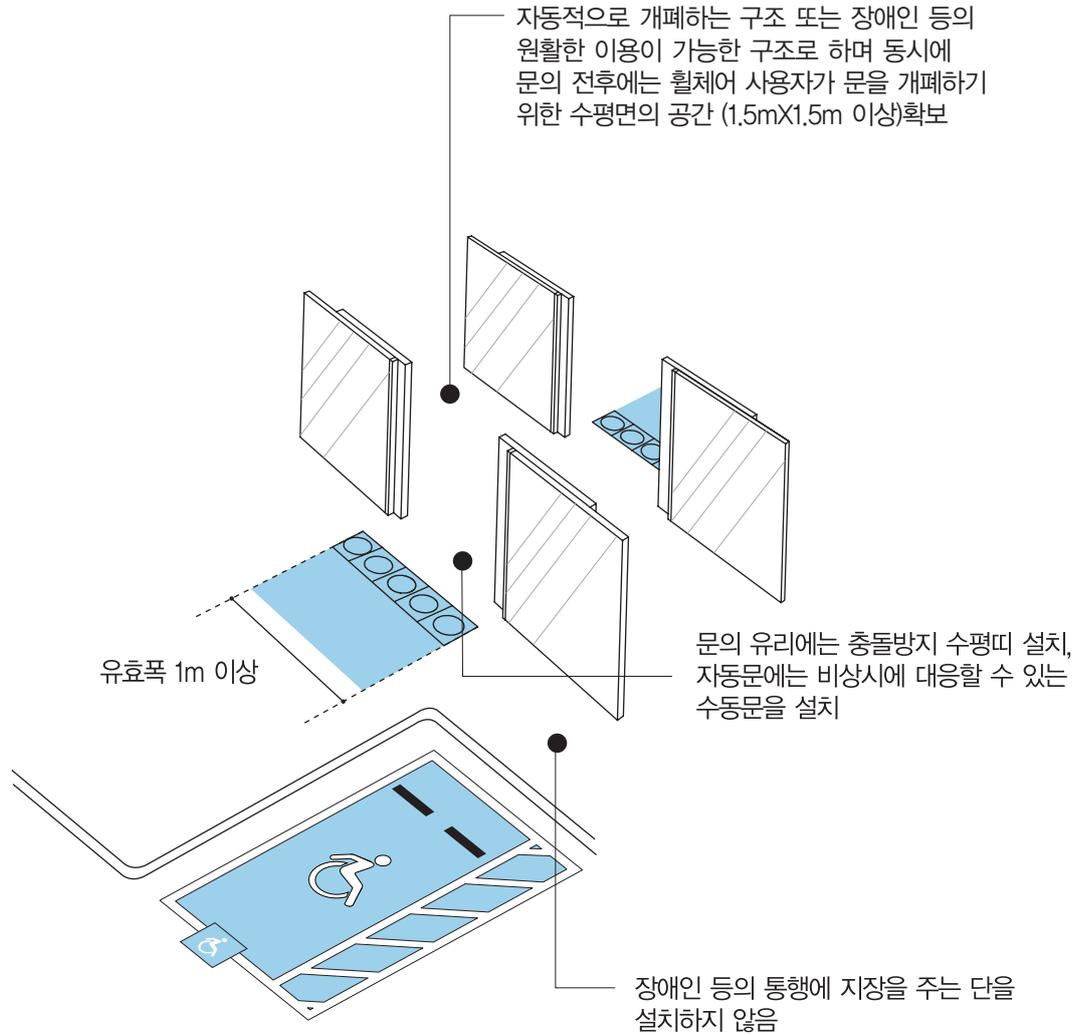
출입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장애인의 닫혀진 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출입이 자유로운 출입구는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와 안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 특히, 유모차나 기타 짐을 가지고 출입하는 모두에게 유익하다. 또한 경사로는 휠체어가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에 매우 좋은 대안이다. 따라서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 설치요점

- 단지 내의 출입구(가능하면 주출입구)는 반드시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출입구는 유도 및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 외부 출입구 바닥면은 눈, 비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처리되어야 한다.
-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 폭, 바닥의 마감상태, 경사로, 참, 손잡이 등에 대한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며, 경사로만으로 층간 이동을 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며,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불리하므로 계단을 병행 설치하는 것이 좋다.

1) 턱낮추기

- 공동주택 단지 내의 접근로는 반드시 주출입구까지 턱과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 턱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2cm 이하로 하고, 걸려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높이 차이 제거〉



〈평탄한 바닥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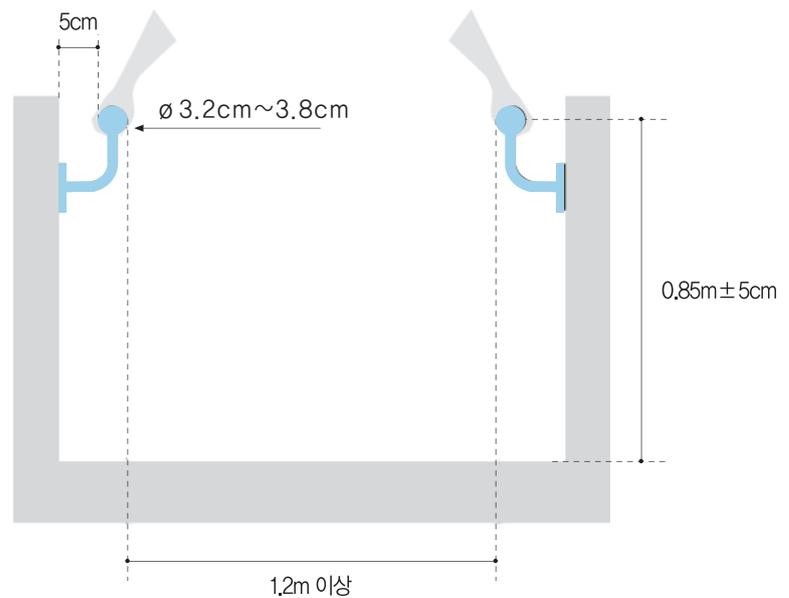
- 2) 접근로의 기울기
- 보도의 진행방향으로의 경사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기울기는 1/18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보행자가 진행하는 방향에 직교되는 면의 경사는 휠체어의 전복 가능성은 물론 기타 보행 장애인을 크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단지 내 보도의 좌우경사는 없어야 한다.
 - 불가피하게 1/12인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동절기 적설량이 많고, 결빙기간이 긴 지방에서 1/12을 초과하는 경사로는 사고의 위험이 높고,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난간을 설치하고 별도의 해빙 또는 결빙 방지장치가 필요하다.



- 3) 접근로의 손잡이와 유효폭
- 공동주택 단지 내 접근로는 가능한 1.5m 이상의 유효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최소 1.2m 보다 좁아져서는 아니된다.
 - 주출입구와 접근로의 높이 차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text{m} \pm 5\text{cm}$ 이내로 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text{cm} \sim 3.8\text{cm}$ 이내로 하며, 이때 손잡이와 벽은 5cm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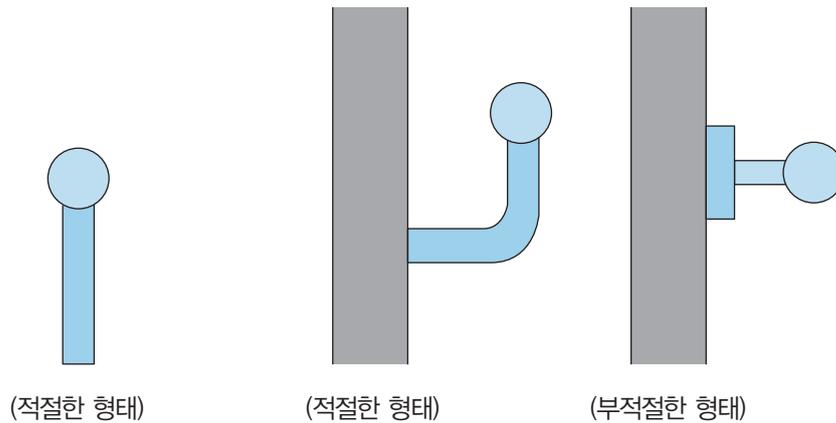


〈손잡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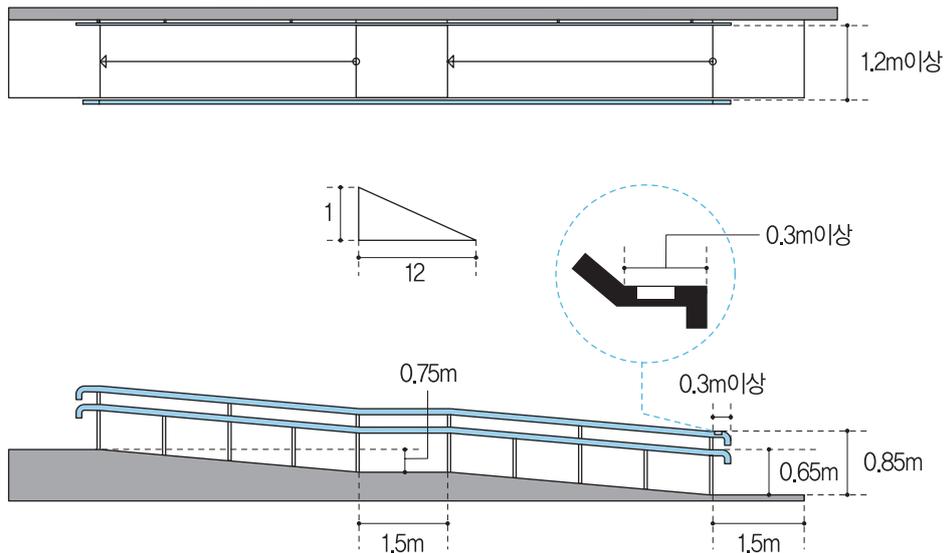


〈손잡이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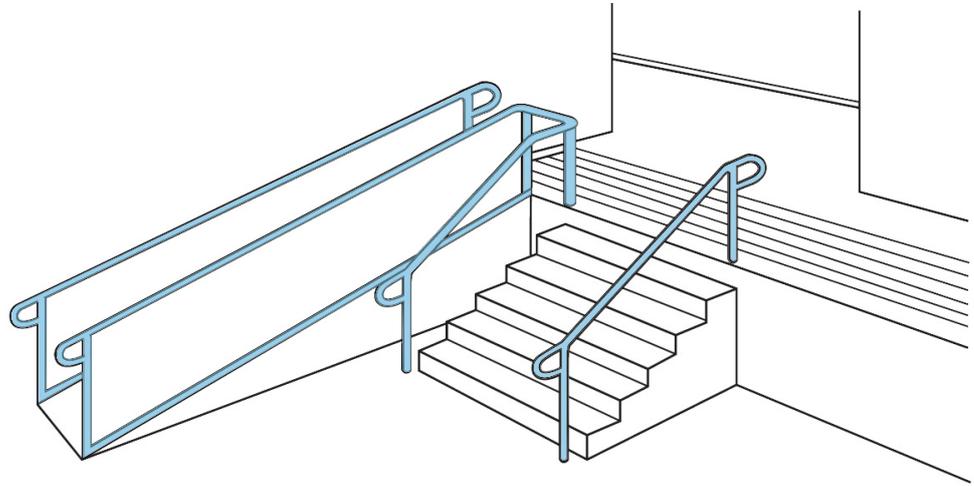
- 4) 경사로의 손잡이
- 접근로에 별도로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적합한 구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 또는 바닥면의 높이 차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한다.
 -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5cm 이내로 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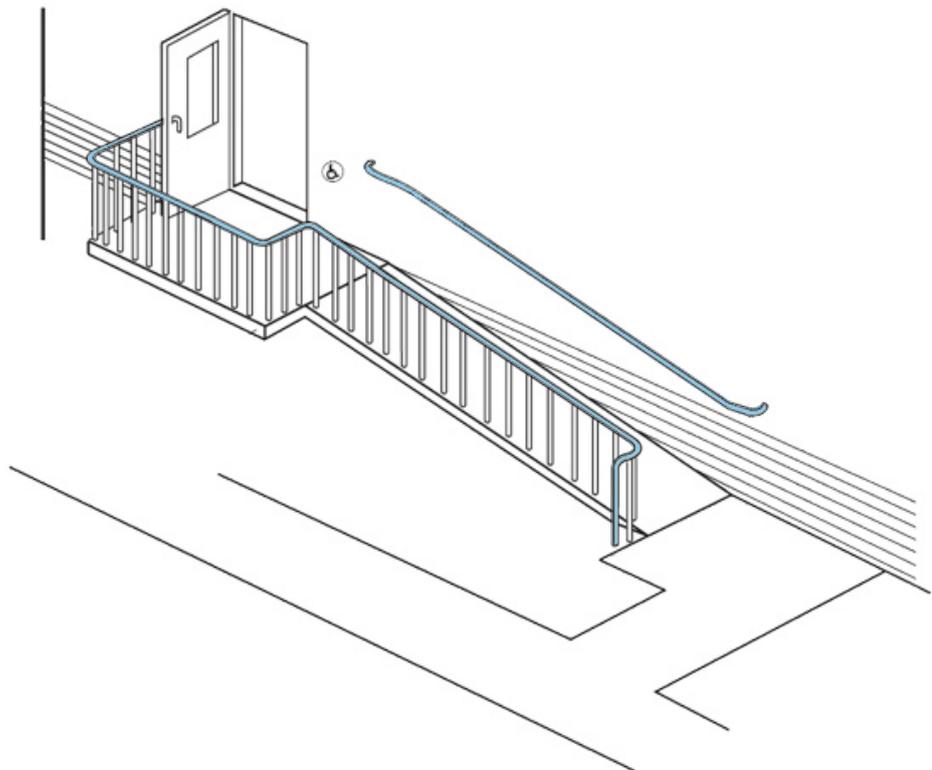
<손잡이의 형태>



<경사로 손잡이의 구조>



(계단과 병설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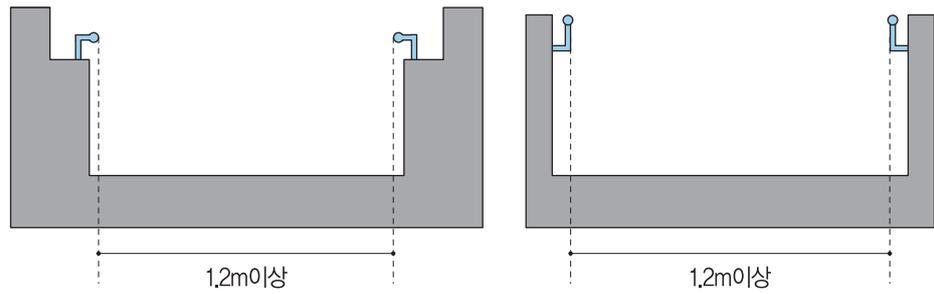


(계단 또는 다른 이동로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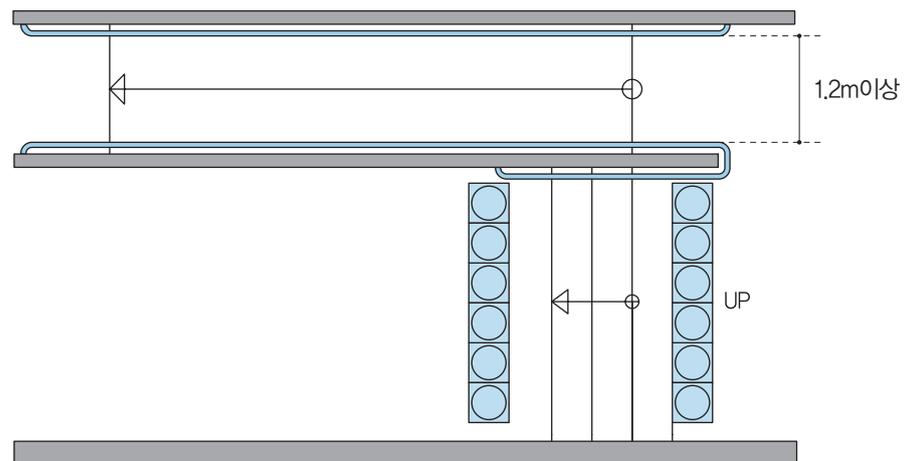
〈연속된 손잡이 설치〉

5) 경사로의 형태 및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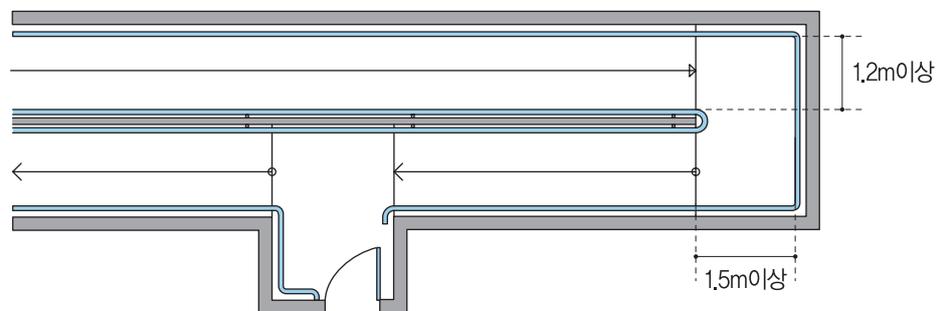
- 경사로는 직선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 경사로의 최소 유효폭은 복도와 동일하며, 최소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작과 끝지점, 방향전환지점은 1.5m 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어야 한다.
- 계단 또는 다른 이동로가 없이 경사로만 설치할 경우, 양방향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1.5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효폭 측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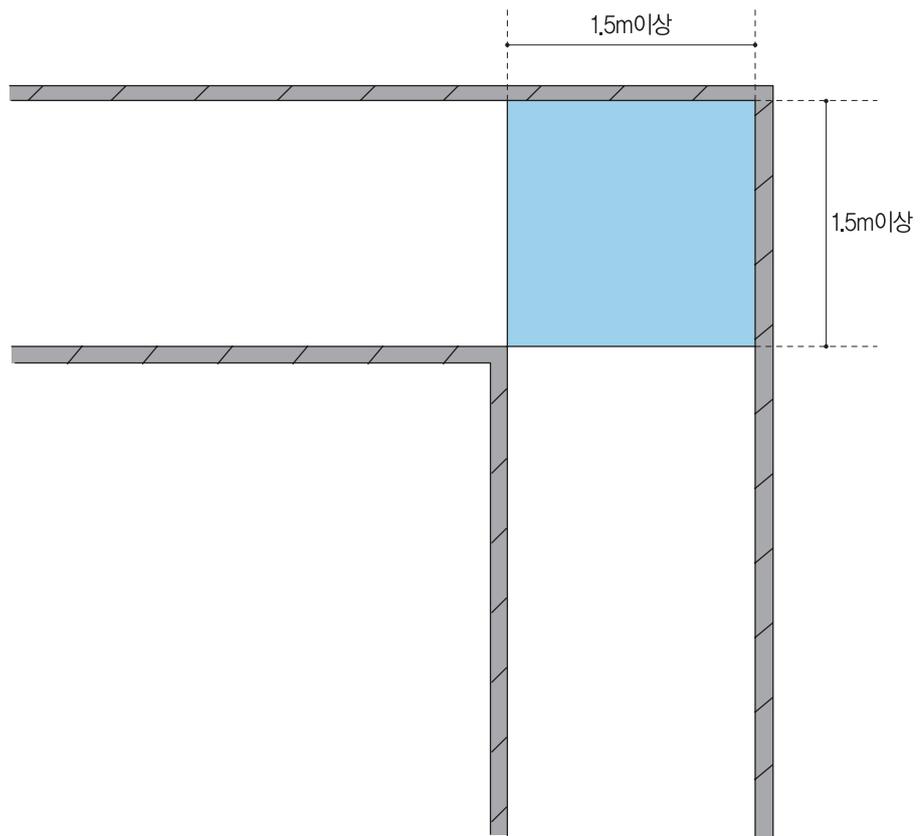
<계단과 병설된 경우>



<계단 또는 다른 이동로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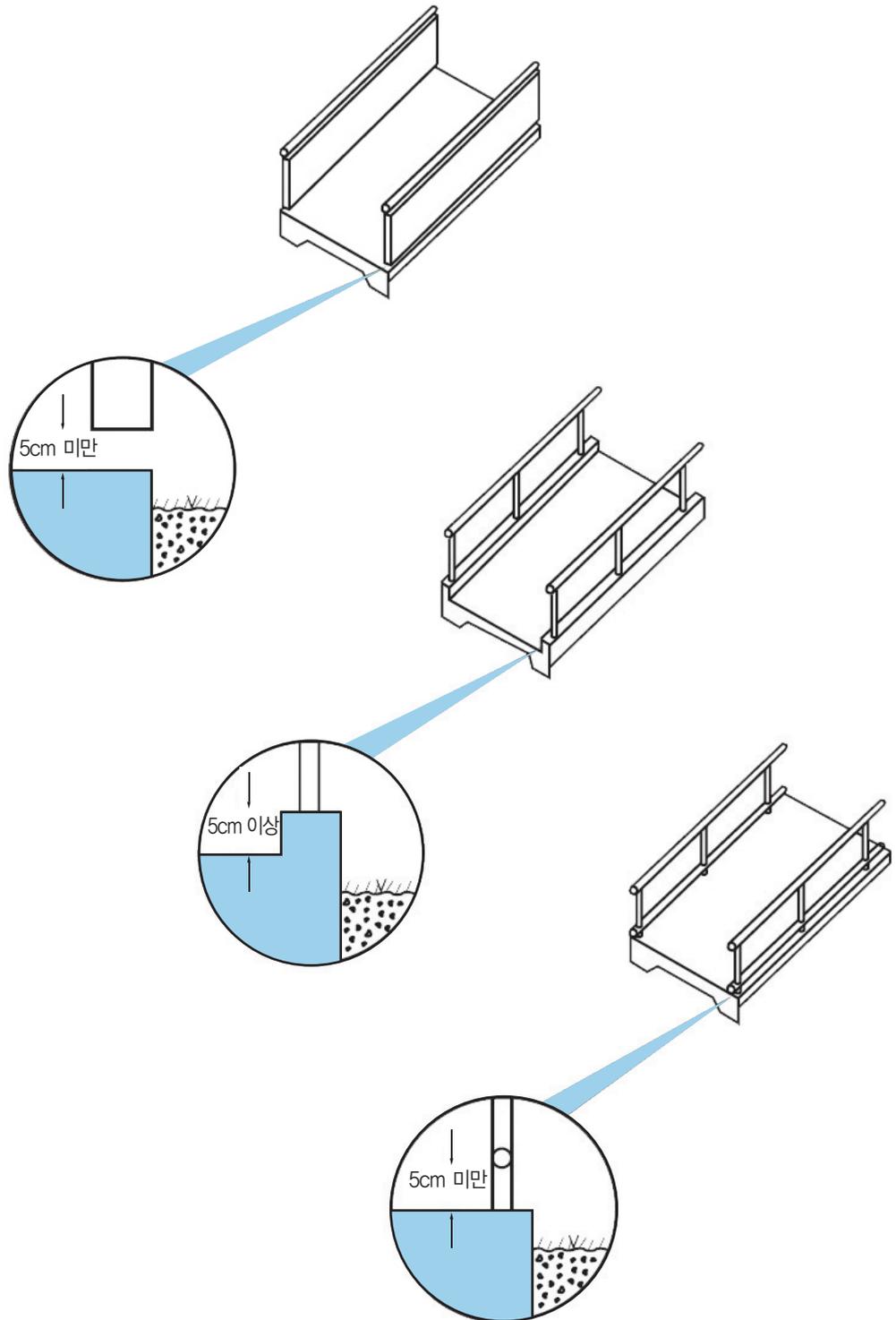
6) 교차부분과 접속부분

- 휠체어 사용자가 회전하거나 교행해야 하는 교차, 접속부분에는 1.5m×1.5m의 수평면이 확보되어야 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1.5m×1.5m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로나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7) 추락방지턱

- 경사로 등 접근로 측면에 높이 차이가 있을 때는 휠체어의 바퀴나 기타 보행장애인의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린이, 노인, 시각장애인 등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방지턱의 구조〉